

장성군의회 공고 제2019-6

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

장성군의회 김미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 공고함.

1. 집회일시 : 2019. 3. 25.(월) 10:00

2. 집회장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
3. 주요안건

가.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나.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
다. 조례안 등

2019. 3. 20.

장성군의회 의장 차 상 현